

다산인권센터

수 신 :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참 조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

제 목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1.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청에 인사드립니다.

2. 다산인권센터는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는 신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남부지역의 인권단체입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에 맞서 대응하고, 인권운동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 인권영화제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3. 다산인권센터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함께 귀청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4. 아래에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다산인권센터

시행 다산2009-08-01

담당 : 한지혜(031-213-2105)

접수

우 442-22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85-13번지

Tel. 031-213-2105

Fax. 031-215-4395

홈페이지 <http://rights.or.kr>

블로그 humandasan.tistory.com

E-mail.

humandasan@gmail.com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문 의 : 다산인권센터 한지혜(010-9916-1461) / 김산(010-9852-4944)

얼마 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꾸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그 동안 몇몇 지역에서 추진된 바 있었지만 그 내용이 미흡하였거나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부족하여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낸 지역은 없습니다. 경기도 지역은 두발규제나 체벌, 강제야자 등 학생인권침해가 심각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김상곤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더욱 기대가 큼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말 그대로 '학생인권'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당사자인 학생이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우선 유감을 표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학생의 인권을 피부로 느끼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학생인권조례는 그 무엇보다도 학생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자문위원회에는 교장, 교사 등은 참여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학생들이 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학생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사자들이 조례 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예를 들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실태 및 학생인권조례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에 대한 의견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 학생들과의 공청회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참여기획단'을 구성하는 것과 같은 더 적극적인 방식도 가능할 것입니다. 경기도 지역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지역별로 참여기획단을 구성하게 하고, 이 참여기획단이 학생인권 현실에 대해 사례를 발굴하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내는 등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는 인권단체도 참여해야 합니다. 인권단체는 인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고, 많은 인권침해의 현장에서 활동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있어서도 인권단체들은 인권의 기준에 맞는 인권조례가 무엇인지 중요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학생과 인권단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1.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고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에 대해 다시 한 번 환영의 뜻을 전달하며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저희의 의견서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과 변화를 기다리겠습니다.

2009년 8월 12일

다산인권센터/인권교육센터 들/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